

2025년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공고

[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요원]

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동군 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행복한 육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[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요원]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02월 12일
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요원	1명	영동군	▶필수사항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자 또는 2급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※ 위의 ①,②,③ 채용조건에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▶우대사항: 자가차량 소지자로 영동관내 출장업무가 가능한 자	-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 - 센터기본사업 - 어린이집지원사업 - 가정양육지원사업 - 센터관련 제반업무 - 기타 센터에서 조직된 업무
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	--

2. 전형일정

구분	전형일정	비고
채용공고	2025.02.12.(수) ~ 2024.02.19(수)	홈페이지 등 공지
응시원서 접수 기간	2025.02.12.(수) ~ 2024.02.19(수) 18:00	
면 접	2025.02.21.(금)	개별연락
최종 합격자 발표	면접 후 개별연락	홈페이지 및 개별연락
근무시작예정일	2025.03.10.(월)	바로 근무 가능자
※ 합격자발표는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(http://ydchildcare.co.kr)공지 및 개별연락		

○ 제출서류(※ 번호순으로 제출/①,②,⑧은 본 센터 양식<첨부파일>에 작성요망)

- ① 응시원서
 - ② 자기소개서
 - ③ 경력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/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)
 -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 -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 - 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
 - ⑦ 기본증명서 1부(※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요망)
 - ⑧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동의서
 - ⑨ 주민등록 등본

○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

- ① 접수기간 : 2025. 02.12.(수) ~ 2025. 02.19(수) 18:00
 - ② 접수방법 :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(ydchild1@naver.com) 이메일 접수
 - ③ 문 의 처 : 영동군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(☎ 043-743-6255)

3. 채용기준 및 근로조건

○ 채용형태

- ① 계약직 총 1명
 - ② 계약기간 :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요원 : 2025.03.10.~2026.03.09.(추후 재계약 가능)

○ 근로조건

- ① 근무장소 : 센터 및 찾아가는 읍·면
 - ② 근무시간 : 주 5일 근무
 - ▶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요원 (월~금요일 / 09:00~18:00)
 - ③ 복리후생 :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

○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.

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
3.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유의사항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용(면접)목적 달성 후 문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예정이며 단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구직자(채용확정된 자 제외)가 요청할 시 채용서류는 본인 확인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